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 브라질

1

2014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4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터키(서비스・투자) 뿐 아니라 중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을 잇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인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건수도 2013년에 1,6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013년 9월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중 FTA 내에 비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고,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및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와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등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 · 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 · 중동

미국 **2**

EU **9**

일본 **18**

중국 **25**

인도네시아 **48**

베트남 **61**

말레이시아 **69**

인도 **74**

터키 **82**

러시아 **87**

호주 **90**

브라질 **93**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 브라질

1

미국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제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수출입은 각각 621억 달러, 415억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 8.1%이며,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32.3%), 석유제품(20.6%), 승용차(17.5%), 자동차 부품(9.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16.6%), 축산물(15.8%), 임산물(14.3%), 수산물(12.2%), 석유(7%) 등이다.

1962~2013년간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53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액에서 24.5%를 차지한다.[1] 미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15.4%), 유통(14.5%), 전기전자(11.0%), 부동산·임대(9.8%), 전기·가스·수도(7.6%), 문화·오락(7.2%) 등으로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59.7%를 차지한다. 한편 1968~2013년간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는 703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의 FDI 대상국(우리나라 전체 FDI 금액에서 19.4%를 차지)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24.8%), 제조업(19.5%), 도매·소매업(18.0%), 금융 및 보험업(1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7%) 등이다.

1_ 2013년 현재(누적액 기준) 미국은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미 FTA는 2007.4월 타결된 후 2010.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2. 3.15일부터 발효되었다.

반덤핑

제로잉

미국은 반덤핑조사에서 덤핑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로잉(zeroing)' 기법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에게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할 우려가 있다.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나,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되어 대미 수출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일련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A-A방식(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식), 재심에서의 A-T방식(개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식) 등 개별적인 제로잉 기법에 대해서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모든 유형의 제로잉이 금지되는지는 WTO 반덤핑협정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제로잉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조차도 DDA협상에서는 적어도 표적덤핑의 경우에는 제로잉 관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처럼 제로잉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과정에서 표적덤핑 조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잉 기법이 적용된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표적덤핑과 더불어 제로잉 기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29일 사안을 WTO 분쟁해결절차

에 회부하여 2014년 6월 20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 기법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2014.7.11.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2]을 기준으로 덤핑율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3]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이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12.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2_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3_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되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양자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4]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미국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어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의 수를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미국 하원은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9월 18일 미국 상원에서도 동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 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FDA 승인절차가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향후 미국 소비자의 피부암 등 각종 자외선 관련 질환이 둔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분쟁광물 규제

미국은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을 2010.7월에 제정하였다. 이

4_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은 2014. 5.31일 연간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되며,[5] 이로 인해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광종(3TG: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의 여부 및 증빙서류를 매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동 분쟁광물규제에 의한 관리·보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나, 이러한 기업에 납품하는 관련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2012.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xternal Power Supplies)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이는 EPCA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부전원공급창치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부(DOE)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2012.11월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통해

5_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첫 2년간 감사유예를 적용하며, 시가총액이 75만 달러 이하인 기업 혹은 매출총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4년간 유예를 적용한다.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보다도 과도한 동작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Energy-star)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EU의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도 개정할 시점이 다가왔으며, 개정된 기준의 시행일은 2014년 4월 11일이나, 외부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될 것임을 답변하였다. 이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ED 램프 시험기준

2012.4월 미국은 에너지 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연방통상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이는 EPCA에 따라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통상위원회(FTC) 라벨링은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2012.11월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통해, 광학특성 측정을 위한 1,000시간 시즈닝(seasoning)요건, 과도한 샘플 개수 및 준비기간(1년), 램프 사용방향에 따른 시험요건, 수명평가를 위한 온도조건, 수명표기, 색온도 표시기준 등 국제표준과 다른 요건들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LED 램프 시험기준안을 수정하고 2014년 6월 5일에 WTO에 통보하였다. 수정안에서는 시즈닝 요건과 수명평가 온도조건을 삭제되었으며, 샘플 준비기간을 삭제하고, 개수를 완화하였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안전현대화법

미국은 2011.1월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품목 1~4부) 등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에도 국내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 강제, FDA의 집행권한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른 해외식품제조업체 실사 실시로 국내업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관련, 예방, 검사, 대응, 수입식품 등의 기준 및 상세의무에 대한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4. 11월 현재, 입법예고한 하위규칙(안)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해외공급자 검증제도,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⑥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⑦식품에 고의적 불순물 첨가방지 계획 등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시행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의 FDA실사 및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무부담이 확대되어, 대미 농산물 및 식품 수출 감소 등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계탕

한국산 삼계탕(HS 1602.32.1010,1090,9000)의 수입허용과 관련하여 미 농무부 FSIS는 2014년 3월 26일 한국을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 허용국가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14년 5월 27일부터 최종 법률이 유효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 관련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6.18), 수출증명서 합의(6.23)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7.24)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EU

EU는 2013년 기준 전세계 GDP의 23.1%인 16.7조달러를 차지(IMF통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89억 달러와 562억 달러이며, 대EU 상품 무역수지는 7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57억 달러), 선박(57억 달러), 자동차부품(36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승용차(38억 달러), 나프타(28억 달러), 원유(24억 달러)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권으로 확산되면서 한·EU간 상품 무역은 연간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1962~2014.6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국가[6]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중에서 EU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0%(7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2011년 50.3억 달러(전체 IFDI 중 36.8%)에서 2012년에는 27.2억 달러(16.7%)로 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 48억 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24.8억 달러) 대비 31.4% 증가한 3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EU OFDI는 1968~2014.6월 누적치(신고금액)가 477억 달러이다.

한·EU FTA는 2009.7월 타결되고 2011.7월부터 발효되었다.

6_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하였다.

정부조달

체코의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 차별조치

체코는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 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여타을 구분하여, 타사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차등화함으로써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제6조(기술규격) 위반 소지가 있으며 우리기업의 체코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정부는 한-EU FTA 무역위원회('13.10월),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13.10월) 등 계기와 주한 현지대사관 등 채널을 통해 체코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하였다.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 체코 정부는 이의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이후 체코 공공기관의 자동차 정부조달 시 차별기준이 해소되어 우리 기업이 동등한 조건하에 입찰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체코 지역개발부는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부 조달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우리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 체코정부의 공공조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EU의 타이어 관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

EU집행위는 타이어의 EU내 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방식으로 직접 각인표기(EU Regulation 117)하도록 하고 있다. EU에 수입되는 타이어 관련 새로운 인증이 계속 도입되고, EU의 타이어 관련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인증번호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번호가 변경될 때마다 몰딩을 제작해야 하기에 인증획득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EU측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타이어 인증번호를 타이어 표면에 각인하여 표기하지 않고 서면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등 인증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LED 에코디자인 기준

2012년 4월 EU는 「Directive 2009/125/EC」에 의거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LED 에너지 효율규제 도입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다. 동 통보안에 따르면, EU의 LED 에너지 효율규제는 소비자들이 조명기구를 구입할 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동 규제에 따라 EU는 LED 등 조명기기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시험검사요건 등을 규정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제품은 유럽시장 내에서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우리의 대EU 수출 가능성이 높은 LED 램프의 경우 EU의 관련 지침은 6000시간(약 8개월) 수명시험을 요구하고, 형광등 대체용 LED 튜브는

모든 방향에서 광도분포차이가 동일해야만 '형광등 대체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 이후 양자협의 및 WTO TBT 위원회 등 여러계기에 EU의 LED 조명 관련 에너지효율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LED 램프의 6,000시간 수명시험은 시간 및 비용 소모가 크며 현행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LED 일부 제품에 대해 수명시험을 면제해 줄 것과 상부까지 빛을 방출시킬 경우 에너지효율이 저하되므로 광도분포 요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EU는 우리측의 6000시간 수명시험 요건 등 완화에 대해 형광등의 경우에도 6000시간 수명시험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형광등보다 고가인 LED 램프 수명 요건을 형광등보다 낮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다만 LED 튜브의 광도분포요건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앞으로 EU는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업계의 대EU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EU의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불소화온실가스 사용기기

2013년 EU는 「불소화온실가스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안(EU/91)」에 근거하여 국내 기구에 의한 법 집행 강화 및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규정(EC No 842/2006)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안에 따르면, EU는 대규모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 사용의 총량 제한(Capping)과 함께 전자기기 등 개별기기에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의 한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물질은 불소화온실가스(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단소(PFCs), 육불화황(SF6) 및 이들 물질들을 포함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품

및 기기인 냉장고와 냉동고, 에어컨 기기 및 열펌프, 화재예방 시스템, 전기 스위치기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불소화온실가스 용기, 용매 및 거품 등이다.

우리나라는 WTO TBT 위원회('13.6, 11월),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13.9월) 등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매(HFCs)의 사전 충전을 금지하는 EU 규정이 EU 현지 충전시설 유지 및 공정 추가 등 우리 관련업계에 큰 부담이 되며 이는 EU 수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EU 집행위에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일본, 미국 등과 공조를 통해 WTO의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14.1월, EU는 사전 충전금지 규제를 철회하고 EU 역외 기업들에게도 HFCs 쿼터를 할당할 것임을 공식 회신하였다. 앞으로도 역외 기업들에 대한 불소화 온실가스의 사용 쿼터 분배 등 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무역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7]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 지침안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에 의해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EU는 2012년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2014년 12월부터 이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

7_ 폐전지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는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회수처리에 대한 규제내용이다. (Directive 2002/96/EC, Directive 2012/19/EU)

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였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및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 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폐기물의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8]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재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지침의규제 대상자는 최종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 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8_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2013.12.18 접속)
http://www.compass.or.kr/know/eu_01_view.asp?idx=47&page=3

환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9]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10.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2016년 ICAO 총회에서 글로벌시장기반조치 (MBM) 스킴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EU는 2017년부터 EU 역내 관련 국제항공사에 대한 ETS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9_ 2012.11월 EU의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하였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타국 항공사에 관련된 ETS 시행시 타국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제38차 ICAO 총회 기후변화 결의안*('13.10)에 상충되는 조치이며, 또한 탄소배출 감축과 감축목표 미달성시 탄소세 납부 등 우리나라 국제 항공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동 제도 시행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EU 집행위는 2014.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GO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EU 철강업계는 2014.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으며, EU 집행위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5.5월경 예비조사 결과 발효 후 추가 조사를 거쳐 2015.11월경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10].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역내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이 공급부족 상태이며, 국내 관련 기업은 EU 변압기 업체 등 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요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등 EU 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10_ 현행 EU 집행위의 반덤핑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조사는 조사개시 결정 후 통상 9개월(연장시 12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관세 부과 결정까지 통상 15개월이 소요되며, 필요에 의해 연장하더라도 최대 18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8.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및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EU, 미국 등 철강수입규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수입제한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무역은 수출액이 346억 달러, 수입액이 600억 달러, 무역수지가 253억 달러 적자이며,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 있어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인 제3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24.4%), 철강판(5.7%), 무선통신기기(6.9%), 반도체(6.5%)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8.5%), 철강판(6.1%), 플라스틱 제품(5.4%), 기초유분(3.8%) 등으로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상품 무역수지는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유치된 IFDI(1962~2014.1분기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36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16.2%를 차지(미국에 이어 제2대 투자국)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 소재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OFDI(1968~2014.3월 누적치, 신고 기준)는 58.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6%이며, 제조업 투자는 대일본 전체투자의 10% 내외로 총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한·일 FTA는 2003.10월 협상 개시가 선언되고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나누어진다. 대한국 국별쿼터 대상 수산물 9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2014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일본은 2014.3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바지락 및 그 가공품, 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2014년도에 새로이 추가된 주요사항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이 일본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례에 근거하여 수입업자 등 식품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지도하며, 경제연대협정 등에 근거하여 외국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수입동향에 따른 감시체제 강화가 특징이다.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통관

운송업의 한일 더블넘버 제도 대상 확대

한일간 더블넘버제도 도입으로 선박에 더블넘버를 달고 트럭채로 선적하여 한국 또는 일본 도로에 내려 그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휴처인 한국 르노삼성과 닛산자동차 후쿠오카 공장 간에 같은 트럭으로 화물을 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트럭은 한국에서 수송을 할 수 있지만 한국트럭은 일본 국내 배기가스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특정물품, 승인된 기업 간의 루트로만 운송이 가능하여 돌아오는 편에서도 다른 제품을 선적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물품의 선적이 가능해지면 물류비용 감소 및 제도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14년 8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2013년 5월부터 개시한 한일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즉시 부산-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하카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이 사업은 부산-오사카까지, 수송품목도 자동차 부품에서 전자기기, 반도체 등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항전보고제도 시행

일본 재무성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일본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출항전보고제도를 2014.3월 시행하였다. 보고대상은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해상 컨테이너 화물이며, 선박회사 및 이용운송사업자가 파악하고 있는 적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세관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적 중지, 입항 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보고기한까지 보고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각각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등록 후에도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약사법에 따른 오미자차 등의 수입규제

한국에서는 오미자를 한약재의 원료가 아닌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제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여타 식품에 비해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일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일본 내의 웰빙열풍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한국과 상이한 식품 원료 관리로 인해 많은 한국업체들이 오미자차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 일본 자체의 규정이긴 하나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통분포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52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4.10월 현재까지 40여종을 인정하였지만 12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원료 원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주원료(원재료 중량이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TPP 체결 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이 복잡하게 얽혀 원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 변경될 전망이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장어가공품, 가쯔오부시,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 등이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

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운반차는 일본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

널 입항 7일 전후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자유로운 터미널 이용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가격통제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돈육에 대한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협상 후에도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는 ①사전에 기준액을 정하고, 동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격간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차액관세제도는 돈육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 보리가루 등 곡류와 커피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다. 차액관세제도로 인해 한국산 돈육의 대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1.3%를 차지(수출 26.1%, 수입 16.1%)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459억 달러, 수입액은 831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6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01~09월 대중국 상품 무역에서도 수출이 1,061억 달러, 수입이 65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대중 수출은 다시 감소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32.8%), 석유화학제품(15.6%), 산업용전자제품(12.3%)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부품(16.6%), 산업용전자제품(15.1%), 철강제품(13.7%)이고, 섬유류(5.2%)와 농림수산물(4.1%)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2~2014.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9.8억 달러)로 EU(34.9%), 미국(24.1%), 일본(15.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임대업(28.3%)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운송기기(12.6%), 비즈니스서비스(12.4%), 화공(10.1%), 전기전자(8.8%), 도소매(8.3%) 등도 주요 투자업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OFDI는 1968~2014.9월까지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이 487.3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특히 전기전자, 운송기기, 화학, 금속 등)에 77.4%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보험(6.4%), 유통(5.1%), 부동산·임대(3.0%)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한중 FTA는 2014.11월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중국은 자국의 법[11]에 근거하여 전기·전자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에 쿼터제를 두고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쿼터제의 경우 2013년 기준 총 쿼터량이 30,996톤으로 작년과 흡사한 수준으로 제한되었으며, 금년에도 희토류 수출기업 목록과 2차 희토류 수출쿼터량이 발표되었다.[12]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13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하여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신청하는 생산·유통업체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과 엄격한 신청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되는 희토류에 2011년 기준 15~25%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USGS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8.4%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2009년부터 중국이 자국의 희토류 산업 관리를 강화[13]하고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세계 전기·전자 기업들이

11_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중국의 관련 법령으로는 <울프럼주석안티몬이온형희토류광산을국가가실행하는보호성채굴광산유형에귀속시키는국무원의통지>(1991), <외상투자희토류업종관리잠행규정발행에관한국가계획위원회의통지>(2002), <희토류업종지속건강발전에관한국무원의약간의의견>(2011), <희토류합금주철을희토류수출쿼터허가증관리에귀속하는공고>(2011) 등이 있다.

12_ 중국 희토류 정책 보고서(http://www.cre.net/list.php?catid=34&page=2) 참고.

13_ 오종혁·김부용(2011), 「중국 내 희토류 산업 관리 강화와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11 No.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토류의 국제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철금속 수출통제

중국은 비철금속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전기동 등 원재료의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7대 제련사에 한해 전기동 수출을 허용하는 등 비철금속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비철금속의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제 원자재가격이 왜곡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품 수입 규제

중국은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HS 8단위 기준 144개 품목[14]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수입금지화

14_ 중국은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44개의 수입금지품목을 지정
- 제1차: 호골, 서우각, 아편 등 국제조약에 따른 7품목 (2001년 12월 20일 발표)
- 제2차: 중고 자동차, 중고 환자감호기기 등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품목 (2001년 12월 27일 발표)
- 제3차: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8품 (2001년 12월 23일 발표)
- 제4차: 중고 의류, 피혁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6품목 (2002년 7월 3일 발표)
- 제5차: 폐기냉장고, 폐기컴퓨터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21품목 (2002년 7월 3일 발표)
- 제6차: 폴리염화페닐, 다이옥신 등 국제조약에 따른 화학제품 17품목 (2005년 12월 31일 발표)

물 2차 금지품목)은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중고 기준이 불명확하다. 중국은 <수입금지화물목록>에 의거,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 및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데, 2차 수입금지 목록(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 중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외국계 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의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절차에 대해 수출국들은 중국 현지 공장으로 중고기계설비 수출시, 선적 전 중국 질량검사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절차가 복잡하며, 제출서류가 많고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중고'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수출에 애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입금지화물목록>과 더불어 수입이 제한된 제품으로는 <수입제한품 종류의 사용가능한 원료 폐기물 리스트>와 <자동수입 허가관리종류의 사용가능한 원료 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방사성 오염이 있는 폐기금속,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관련 동물과 동물의 제품, 고기나 골분 등의 동물사료와 동물 원본성 생물 제품, 우측용 핸들,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티타늄 재료, 중고 티타늄 합금 주철, 페로티타늄 합금 자투리, 티타늄 재료, 티탄철 합금속 법정 검증 제품,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멸종위기 동물 및 생물, 가짜 총, CFC-12 에어컨 냉각기술을 사용한 자동차 및 CFC-12 냉각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등이 있다.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53개 분야 777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중국내 각 지방 해관(세관)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 기업들이 납품지연·계약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도수가 21도인 주류 제품에 대해 A해관은 도수를 높이라고 하고 B해관은 도수를 낮추라고 요구한다거나, 동일 해관 내에서도 해관장이 바뀌면 이전 관행(history)에 의해 관리되어온 부분은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관의 제품 품질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제품의 색택(色澤), 크기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금지 해제 결정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수입허가제도 시행, 특수위생허가증 요구, 가소제보고서 제출요청 등 수입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조건을 고지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국 구제역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사전고시 없이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취득하는 데는 1년 이상(최대 3년)이 소요된다. 불시에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이미지가 악화되고 동시에 거래처나 대외 홍보 시 해명자료가 필요하나 관련기관에서 통지서 등 근거 제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어묵의 경우 수산물 어획증명이 포함된 위생허가증을, 주류나 음료의 경우 가소제검사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사전 고시 없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부당한 행정 처리 및 행정요구에 의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물(마른미역, 건새우 등) 비닐포장 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중국 상검국과 수산물로 판단하는 중국 식약청 간의 소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해당 상품을 자체 폐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각 지역 해관마다 또는 동일한 해관이라 하더라도 해관원마다 HS 코드 분류가 상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담당자가 바뀔 경우 새로운 세번이 적용되어 관세가 인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해관은 바나나맛 우유를 음료로 분류하여 유제품에 적용되는 15%의 관세 대신 35%의 관세율 적용하고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관 기간이 길고 예측하기 어려워 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상검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 통일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 상검국의 비안(備案,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심사절차)내용이 청도에서 통용되지 않고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서 비안절차가 다르고 통용이 되지 않는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포장 비안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1개 제품 신청시 처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업무진행이 매우 느리다.

수입식품의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어 라벨링이 필요하며, 2011.6월 이후에는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되고 반드시 포장지 라벨링만 가능하다. 특정 해관에서 라벨 기준이 변경된 2~3개월 후에는 기존 라벨을 모두 폐기해야하는데, 캔 맥주와 같이 종이 라벨이 아닌 경우에도 라벨 기준이 바뀌면 전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

한편, 통관 에이전트에서 지정한 라벨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정회사에서 제작하여 추가비용 발생하고

있다. 지정 라벨업체 사용의 요구는 GATT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된다.

통관항 임의 지정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 제58조 등에 따라 완성차(자동차)는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 황포, 만주리, 황강(심천) 등 6개 지정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은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지정된 19개 도시(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시(항구)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어 행정절차상 지역 간 통일성이 결여되고, 최초로 수입신고한 항구를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이 확대될 경우 물류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국 내 해운노선 변경 압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경→상해(통관) → 연운항(통관) → ferry 이용→한국」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사들은 중경세관으로부터 「중경(통관)→ 상해(통관)→ferry 이용→한국」 노선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운송사의 경우 연운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송비 및 배송시간 측면에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경세관은 세수 확보를 위해 중경세관에서 통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보조금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고율(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

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령·제도·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의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공고일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15]하고 있고, 이외에

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여하한의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측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리튬이온전지 안전 기준

중국은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2013년 12월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표준과 다른 중국의 시험항목들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어, TBT 협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15_ 중국 정부조달법(政府采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어 2012.12월 현재 22개 분야 157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16]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17]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최소 80만에서 90만 위안의 시험비용이 필요하며 인증 소요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辦法)》을 시행하고 있다.

16_ 2012.12월에 발표된 CCC 인증 대상품목은 ①전선케이블(4종),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③저압전기장치(9종), ④소형 전동기(1종), ⑤전동공구(16종), ⑥용접기(15종), ⑦가정용 기기(18종), ⑧음향 영상설비(방송용 및 실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은 제외)(12종), ⑨정보기술장비(11종), ⑩조명장비(2종), ⑪차량 및 안전제품(16종), ⑫차량타이어(3종), ⑬안전유리(3종), ⑭농기계(2종), ⑮전자통신 단말기(9종), ⑯소방제품(7종), ⑰안전기술 예방설비(5종), ⑱무선인터넷설비(1종), ⑲인테리어용 제품(3종), ⑳완구류 제품(6종) 등이다.

17_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이다.

이로 인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 6가지 독성 화학물질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이들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품라벨 또는 포장에 유독물질 명칭, 회수이용가능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이 곧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인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電器電子産品有害物質限制使用管理辦法)》은, 적용 대상을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이었던 것에서 "전자제품"으로 수정해 관련 제품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독성 화학물질

중국 환경보호부는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방행단(放行單)(유효기간 6개월)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 별로 방행단(放行單)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방행단(放行單)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은 수입 인허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의 경우 유해화학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과 관련된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존재 한다.

의약품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의 수입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의 인정기준이 없어, 수입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

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개월에서 5개월 , CFD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18]되며, 심사비용은 한 품목당 인민폐 4만5천 위안이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된다. 단,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는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외에 CFD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 마다 품질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중국식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2014.6.1.일 시행) 제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중 ①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 가능한 경우, ③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할 때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에 이와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아울러 CFDA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때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2014.6.1일 시행) 제2장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CFDA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접수된 자료를 기술평가부서로 전달하고, 기술평가부서에서 심사평가한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18_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부서에서 심사평가(대기)하는 기간이 매우 길어 수입허가를 받는데 있어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생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8천 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개당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다. 립스틱을 예로 들면 색상별로 같은 색상도 1호, 2호, 3호 등 호수별로 모두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경과 천진의 경우 새로운 대리상이 수입을 할 경우 수권서가 필요 없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수권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제품출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과정에 보완절차

가 없어 오타, 오기 등 미미한 시정사항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외 화장품 라벨(중국어) 상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 식품표준의 김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국내(식품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김치를 중국의 절임채소 중 파오차이로 분류하여 엄격한 대장균군 규격(30MPN/100g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김치는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에서 유래하는 대장균군이 초기에 존재할 수 있어 중국의 절임채소 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은 젓갈을 수산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일반세균(8,000/g 이하)과 대장균군(30MPN/1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젓갈은 비가열제품으로서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존재하여 수산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조미김을 조류제품으로 분류하고 일반세균(30,0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미김도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조류제품의 위생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비가열 제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는 바,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을 고려한 규격 설정이 요구된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

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19]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配方)'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후 약 20년간은 전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 지식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바,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3년에도 발명특허 출원

19_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 시,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 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825,136건, 상표 출원 1,886,546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감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들어 증가율은 다소 정체되었지만, 1년간 88,583건이 접수되는 등 5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재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2014.5.1일 시행)하였으며,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 또한 현재 개정진행 중에 있는바,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법률서비스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20] 중국은 WTO 가입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서비스 양허표)에 따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상 지역 제한과 설립 형태 제한(대표사무소(대표처)만 허용)[21]을 두고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

20_ 각국의 다자·지역 통상협상 서비스분야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을 자문하는 외국법자문사(FLC)는 주로 허용하지만 주재국법의 자문은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_ 여타 분야와 다르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표사무소의 영리추구행위를 허용하였다.

법 자문으로 제한하고 외국인변호사에 대한 경력요건(2년 이상)을 요구하며, 내국민대우상 외국인변호사는 1년에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을 적용하고, 외국 로펌의 중국대표사무소에서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 법률서비스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6개월 이상 중국 내에 주재하는 변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만 대표사무소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만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법률서비스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익의 25%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세후 순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때 다시 세후 순이익의 10%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유통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 약속에 따라 유통업의 취급 품목 제한 및 외국인지분율 제한을 대부분 철폐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烟草專賣許可証管理辦法》와 《鹽業管理條例》 제20조에 따라 아직까지 외자 위탁중개기업·도매기업이 담배와 소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자 소매기업도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9월 30일 설립된 상하이자유무역구내에서는 외자 기업의 소금 도매를 허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 4일 반포한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기존 소매업 분야에서 제한이 있었던 책, 신문, 잡지, 제약품, 농약, 멀칭 필름 등은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주유소의 경우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매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다수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광서비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단계적 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관광서비스 분야의 제한을 많이 개선하거나 철폐하였다. 예를 들어 WTO 가입 당시 중국은 여행알선대행서비스(여행사)에 대해 합작투자요건을 두고 외국인다수지분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외국여행사의 등록출자액을 4백

만 위안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WTO 가입 후 「외자여행사투자특별규정」「여행사조례」 등에 따라 100% 외국인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등록출자액 상한을 2.5백만 위안 이상으로 완화하였다.[22] 이와 같은 시장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00% 외국인지분 보유 여행사 및 합작여행사가 아웃바운드 영업(중국인의 해외여행(홍콩·마카오·대만여행 포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국 정부는 시범적으로 중여도이어·TUI, 국여운통·American Express, 중신여행사·JTB 등 일부 합작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문화콘텐츠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높은 투자장벽을 두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1) 신문 관련업체, 2)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 총발행과 수입업무, 3)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과 수입업무, 4) 각급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방송TV채널, 방송TV전송봉사네트워크, 5) 방송TV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6) 영화제작회사, 발행회사, 영화상영회사연맹, 7) 뉴스인터넷홈페이지, 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 장소, 인터넷문화경영, 8) 녹화제품방영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 분야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문화경영 항목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며, 사업에 필요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ICP)[23]의 독자적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24] 발급에 있어서

22_ 중국은 2009년 5월 이후 등록출자액을 내국민대우인 30만 위안으로 완화하고 연간 매출액 요건을 폐지하였다.

23_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 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 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

도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에 따라 영화의 제작·수입·배급을 중국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영화 상영업은 합작투자 요건(외국인지분율 최대 49%까지 허용)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외국영화의 수입을 연간 20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영화제작사와 수익배분방식),[25] 이외에 판권구매방식으로 허락받은 30편의 영화를 추가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외화의 총 수입 편수는 64편까지 가능하다. 중국은 외국 영화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영화사는 공동제작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13년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2014.9 발효)하고,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서는 자국 영화에 부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업

중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 규제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회사)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외국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분 49% 이하)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24_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25_ 중국은 WTO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20편의 수입 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외에 IMAX, 3D유형의 영화 14편을 추가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내국주(A주) 브로커리지 업무에 제한(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른 허가)이 존재하는 등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설립 및 영업에 규제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문회사 역시 일정요건 충족 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한 중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제한이 있다. 한편 2007.12월 외국인의 증국선물회사에 대한 일부 지분참여가 허용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의 미비로 실질적인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장벽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의 제조에 대해 2007.12.1일부터 시행되었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장려업종에 포함하고 외자비율 50%까지 허용한다는 제한을 두었으나, 2012.1.30일부터 시행된 신 목록에서는 별도의 외자비율 제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동차 완성차의 제조에 대해 합작투자요건과 외자비율 상한(50%)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회람된 외상투자산업목록 수정안은 완성차를 여전히 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외자비율 상한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수입관리방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동 사항은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로, 신에너지자동차 부품제조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장려 목록에 포함하였다.

외자기업에 대한 석유화학 투자제한

중국은 2012.1.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에틸렌과 PVC 제조업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투자자의 위험이 증대되고 신규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2007.12.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연간 생산능력 80만톤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을 중국측 대주주 요건을 두어 장려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연간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생산과 카바이드 PVC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틸렌 후가공제품 생산'과 '아세틸렌법 폴리염화비닐(PVC)'이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동 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따르면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전·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박금융 지원 차별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1.30일부터 시행)에서 선박과 해양구조물 및 그 부품을 장려류에 포함[2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업체와 외자 조선업체를 차별하는 금융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지만, 외자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에 있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제작금융 대출조건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조선소의 중방 지분은 51%이나 실질적으로는 67%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적에 따른 금융지원상의 차별은 외자조선업체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4년 11월에 회람된 외상투자산업목록 수정안에 따르면 선박 금융지원에 대한 제약은 변동이 없으나 합자 또는 합작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조항이 기존 43개에서 11개로, 중국측 지분통제 조항 역시 기존의 44개에서 32개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몇몇 선박 분야의 설계 및 제조도 포함되었다.

기타

까다로운 외국인 취업비자(Z비자) 발급요건

중국은 <재중외국인취업관리규정>,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비자(Z비자)와 외국인 주재원 비자 등을 발급·관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중외국인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27]를 갖추어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을 하고 중국

26_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서 장려형 외상투자산업목록의 Ⅲ. 제조업 중 (19) 교통운송설비제조업에는 18. 호화 여객선 및 심수(3,000미터 이상) 해양공정 장비의 설계, 19.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의 제조와 수리(중국측 지분 통제), 20. 선박의 저속, 중속 디젤엔진 및 그 부품의 설계, 21. 선박의 저속, 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 (중국측이 지분 통제), 22. 선박 선실 기계의 설계 및 제조, 23. 선박 통신 네비게이션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선박 통신시스템 설비 및 선박 전자 네비게이션 설비, 선박용 레이더, 자동 방향타 및 선박내부 공공방송시스템 등, 24. 유람선의 설계와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당국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학력요건(대졸 이상)과 전문지식 충족요건(근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학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요리사, 미용사 등은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런 인력을 채용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만 60세 이상인 외국인(전문직 포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중국내에서 기업들이 외국의 은퇴한 기술자나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출입국 절차 외에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중국 정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며, 주재원 비자 수속 시 '안전 보장 각서'을 쓰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27_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중문이력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기업영업집조, 비준증서, 회사공장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1배 증가하여 2011년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 296억 달러로 다소 줄어든 데 이어, 2013년에는 석유·석탄·가스의 교역량 감소로 24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13년 기준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116억 달러와 1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 휘발유, 합성수지, 편직물, 열연강판 등으로서 이들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42.4%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등으로서 이들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입의 65.6%를 기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투자관계에서 우리나라의 IFDI 유치액(1962~2013년 누적치, 신고금액 기준) 중 인도네시아가 투자한 금액은 9.7억 달러로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0.4)%에 불과하며, 투자 분야도 부동산·임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FDI(1968~2013년 누적치, 신고금액 기준)는 114억 달러로 전체 OFDI 중 (3.0%)를 차지하며, 제조업(56.7%)과 광업(21.3%)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에는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28]되었으며, 2013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2012.7월 협상 개시), RCEP (2012.11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8_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되었다.

수출통제

목재 및 팜 수출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벌채와 도벌 등을 방지하고자 1985년부터 목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9]

2012.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함에 따라 SVLK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만이 목재의 내수 판매 및 수출이 허용되는데,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SVLK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생산된 목재를 모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에 고율의 수출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아울러 팜의 경우에도 2010년 팜농장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 주요 수입처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팜생산업체도 2014년 말까지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팜오일 농장 조성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석 수출금지 및 수출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호 및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2012년 제7호, 재무부령 2012년 제75호에 따라

29_ 인도네시아에서는 1985년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에는 저가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고율(250~4,800$/㎥)의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1992년에는 원목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고율(500~4,800$/㎥)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2001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원광석의 수출을 규제한다. 2012.5.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광석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르면 금속 14개, 비금속 8개, 기타 19개 등 총 41개 광종의 미가공 광물(단, 석탄 제외)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제·가공 없이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2014.1.12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선결조건(①보유 광업권(IUP)이 중앙정부가 인정한 Clean and Clear Status 일 것, ②재무적 이행사항 및 세금 완납 증명, ③2014년부터 더 이상 원광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 ④수출세 부담, ⑤광물 수출 할당량과 기간)을 이행하는 경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석 수출규제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원보호 및 국내시장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광물 생산수출업체는 '14년까지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업법 시행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2012.5.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세 부과 조치에 따르면 석탄을 제외한 총 65개 광종(금속 21개, 비금속 10개, 기타 34개)에 대해 수출시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4.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투자실현액에 따라 수출관세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투자 실현율을 총 사업액의 0~10%, 10~25%, 25~50%, 50~95%, 95~100% 등 총 6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따라 관세를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수입규제

전자제품(핸드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핸드폰, 핸드헬드/테블릿 PC[30]의 불법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

30_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

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는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31]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조치에 따라 최소 22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 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rnal Importir)규정은 2012.5월 처음 발표(무역부장관령 No.27/2012) 되었으며, 2012.9월에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32]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31_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Juanda(Surabaya) and Hasanuddin(Makassar), 항구: Belawan (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32_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

에는 보완재에 대해서는 자사생산 불가능 조건을 삭제하여 수입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 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Certificate: RIPH)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증명서와 수입자지정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불공정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제한

수입 주류에 대한 수량제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해서 수입 수량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들은 지정 주류 수입자로 신청·등록해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정한 연간 쿼터 한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간 쿼터로 인해 수입제한 효과를 초래하고, 운영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인 무역부장관령 No.19/2008, No.05/2005에 따라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shipment verification)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제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섬유류 및 식품류 등 7개 수입 상품군(유제품, Nitro Cellulose, 쌀, 소금, Pre Cursor, 설탕, 광학디스크)이 인도네시아의 선적전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수 등 비정상적· 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WTO 선적전검사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33]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33_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가능 항구는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니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니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이 아니며, FTA등을 통해 국내시장 개방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무를 약속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니측의 이러한 자국제품 우대관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

외국인 투자제한조치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에서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 투자

제한규정(대통령령 No.39/2014)이 적용되고 있다. 2014년 4월에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PP No.39/2014)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투자제한 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 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에 따라 외국인이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2014년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발전, 환경, 운송,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발전 분야의 경우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34] 환경 분야에서는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업의 외자지분을 95%까지 허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운송 분야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외자지분은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 형태인 경우 최대 95%까지 허용하고 있고,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

34_ PP No.39/2014에 따르면 발전 규모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 제한이 완화 또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①발전용량 1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일 경우 100% 외국 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②과거 1~10 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가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단, 1 MW 이하는 여전히 불허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 ③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외자지분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송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외자지분을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병원서비스의 경우 AEC 출범에 따른 자유화 확대의 일환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해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였다.

한편, 금번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된 주요 내용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 농업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기준을 강화

■ 원예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정을 신설

■ 축산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2010년 리스트에서는 125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토록 규정)

■ 어업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토록 변경

■ 오일&가스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

-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일가스 업스트림(upstream)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는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Offshore) 파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
-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

○ 유전, 가스전의 O&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

■ 상거래

자국 내 중소상공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

○ 도매(유통), 창고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뚱가라, 말루꾸, 빠뿌아에 투자할 경우 67%까지 허용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BKPM에서 추후 상세 정의 추가 발표 예정) 등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

■ 관광·창조경제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급 숙박업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까지 인정

○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로 인정

■ 통신, 정보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로 지분 한도를 축소하였으며, 통신탑은 여전히 외국인투자를 불허

○ 2010년 인도네시아 투자 Negative List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농업·임업·문화관광·통신정보·금융 등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외국인·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

※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방송국(라디오, TV), 전화/인터넷 키오스크 및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사, 사설 방송국(LBS) 및 청약제 방송국(LPB)의 경우 100% 국내자본으로 제한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통신망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35]),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36]), 메일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통신기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등

문화 관련 외국기업의 설립 및 합작투자 제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화 필름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광디스크 생산 기계에 대한 수입도 규제하고 있다. 지상파(민영방송)와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최대 20%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방송 재송신 시 인도네시아 국내에 송신권을 보유한 위성을 사용해야 하는 등 방송사의 외국인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멀티플렉스 기업의 경우, 2위 사업자인 블릿츠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를 위탁 경영하는 형태로 진출해 있다. 블릿츠 메가플렉스는 인도네시아 멀티플렉스 분야의 2위 사업자기는 하나 시장 점유율이 10%에 그치는 등 사실상 1위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기타

사치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luxury goods)에 대해 매우 높은 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37]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을 '생필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배기량 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10~30%의 사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3,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세단 및 스테이션 웨건)와 2,500cc를 초과하는 디젤 자동차(세

35_ 세부적으로 고정망은 49%, 폐쇄 고정망은 65%, 핸드폰 네트워크는 65%까지 지분 허용

36_ 세부적으로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95%,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49%, 인터넷 연결 서비스(NAP)는 65%,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49%까지 지분 허용

37_ 재무부장관령 2012년 제27호.

단 및 스테이션 웨건)등에 부과되는 75%의 사치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외에도 가정용품, 냉장고, TV, 에어컨, 식기세척기, 비디오, 캠코더, 향수, 선박, 요트, 항공기, 모피 소재 카펫, 악기, 주류, 피혁·합성피혁제품, 가죽류, 가구류, 도기제품 등 매우 다양한 품목에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 품목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불균형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양국간 상품 무역이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13년 282.6억 달러로 연평균 21.3% 증가하였으며,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양국간의 상품 무역은 약 4.0배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11억 달러와 7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39억 달러 흑자이다.[38]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43.6%), 기계류(12.3%), 섬유류(11.9%), 화학공업제품(11.4%), 철강금속제품(11.1%)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류(32.0%), 전기전자(16.9%), 농림수산물(15.5%), 광산물(15.5%)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39]한 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5대 OFDI 대상국이다. 1968~2014.9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FDI 누적액은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08.5억 달러(전체 OFDI에서 4.0%를 차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5.7%)과 광업(18.2%)이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임대(8.5%), 건설업(4.2%)에 대한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다.[40]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되었고 2014.12월 한베트남 FTA가 타결되었으며, 현재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38_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와 1.4%이다.

39_ 1962~2014년 9월 누적치(신고금액 기준)가 1,465만 달러에 불과하다.

40_ 비중은 전체 투자액 중에서 각각의 업종에 대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 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금속 스크랩 15% 등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국산업에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부 광공업 생산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특히 ①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알루미늄 생산의 주요 두 개 광산(Tan Rai와 Nhan Co mines)이 가동되거나 또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전까지는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② 북부지방의 경우 탐사면허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③ 금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현대적인 기술로 이뤄져야 하고, ④ 시멘트 생산용 석탄은 개발이 허용되나 정부 지침의 기본계획(master plan)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베트남은 2012년 2월부터 광물의 수출, 탐사, 개발, 가공, 사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부터는 금 거래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격 급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SBV(State Bank of Vietnam)의 금시장 재편계획에 따라 금괴 생산과 금 소재 material gold의 수출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정부에 귀속되며, 민간업체는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SBV를 통한 금괴거래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금 개발 면허도 금지되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HS 8703, 9인승 이하 차량)의 수입에 있어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과거에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자동차 생산기업의 딜러인증 관련서류 획득 절차가 매우 어려워, 이러한 제도가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공업협회(VAMA)는 이 규정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협회는 이 법안 폐지 시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허가제 규정이 수출·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입 철강제품 사전등록

베트남은 자국법(Circular 23/2012/TT-BTC)에 따라 2012.9.20일부터 모든 수입철강제품(72류, 73류)에 사전 산업무역부 등록을 의무화하였다.[41] 이에 따라 수출,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어 대베트남 철강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41_ Circular는 베트남어로 Thong Tu(한자의 通諮에서 유래된 말)이며, 이는 각 부처 장관이 Decree(베트남어로 Nghi Dinh(한자의 議定에서 유래된 말이며,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기본법은 영문으로 제공하지만 Circular와 같은 하위법은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다. 베트남의 영문화된 주요 하위법은 로펌이나 그 밖의 기관이 비공식적으로 영문화한 것이므로 참고시 주의를 요한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의 시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단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직인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인보이스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건설 입찰에서 차별적 관행

베트남 정부조달 시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시 오직 자국산 물품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국 내에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체입찰을 시행한다. 또한 입찰과정이 지연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발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물품 공급계약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컨설턴트 선정 입찰의 경우 반드시 베트남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업체 또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가격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와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제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42]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각국 식약청에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판매 제품을 해외시장에 얼마나 빨리 출시하느냐가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42_ 여타 국가에서는 통상적인 등록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등록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등록이 지연될 경우 국내에서는 단종 된 모델을 해외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 세관은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며 자국민들에게 잠재 수요가 높은 고가의 화장품 등 고가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와 세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쟁정책

외국기업과 농민간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

베트남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농산물 거래 시, 농민과의 직거래를 규제하고 반드시 베트남 중간 유통상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과 자금력이 부족한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조치이다. 이러한 규제는 농산물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외국기업,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투자

베트남의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1986년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베트남 영화산업에도 민간 진출이 이루어지며 시장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영화시장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이념문제로 인한 검열과 불규칙적인 정부 간섭이 영화산업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흥행성 있는 한국 영화의 개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BCC(Business Corporation Contract)계약서를 근거로 베트남 내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정 발급기간은 15일이나 실제 45~60

일 정도가 소요되어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송금이 되지 않아 제작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 외국계 기업의 수입업 투자 허가서 발급지연 및 유통제한

베트남은 2011.9월에 시행된 수상령[43]에 근거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수입업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투자계획국(DPI)의 관련 부서(10개 이상)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제출 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발급기간이 1~2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은 상품의 수입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면허에 유통할 권리까지 명기되어 있어야만 해당 상품의 베트남 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권리가 없는 외국 기업은 베트남 대리인이나 베트남 유통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정부 인가를 받은 제3자 창고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베트남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소매업 관련 허가 규정 불명확

베트남 정부가 2013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44]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업자[45]는 경제적 수요평가(ENT)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ENT의 실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법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ENT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매업 투자의 경우 경제적 수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표자 선정기준이나 심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43_ 동 수상령은 다음과 같다. “To restrict investment projects in the non-manufacturing sector and those increasing trade deficit.”

44_ 시행규칙 8(Circular No.08/2013/TT-BCT).

45_ 500㎡ 이하 소매점,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 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 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로 제한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약품 수입 및 유통 제한

베트남 정부는 미국 FDA 및 유럽의약청의 엄격한 기준을 차용한 관련 법(Circular 03/2012/TT-BYT)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운 화학물 또는 의약품을 등록할 때 해당 제품이 원산지국가에서 사용 된지 5년 이내일 경우 베트남에서 임상실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Circular 47/2010//TT-BYT 및 APPENDIX에 의거하여 사람에게 약으로 처방되는 성분 중 178가지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Law ON PHARMACY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사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약품 사업조건에 관한 충분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약품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되고 있다.[46]

46_ WTO TPR 보고서(2013년 8월).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간 상품 무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19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85.9억 달러와 111.0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5.1억 달러 적자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광산물(25.0%), 전기전자(23.8%), 화학공업제품(15.8%), 기계류(15.3%), 철강금속제품(15.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48.9%), 전기전자(23.2%), 농림수산물(8.3%)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1962~2014.9월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총 7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액에서 3.2%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34.0%), 유통(9.3%), 전기전자(9.0%), 부동산·임대(6.9%)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OFDI는 1968~2014.9월 누적액(실투자액) 기준 4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7%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7.6%)과 광업(34.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5.3%), 금융·보험(5.1%)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2013년 현재 RCEP 협상이 추진중이고 양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47]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달러/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48]를 수입할 경우 Import License(AP: Approved Permit)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

47_ 관세법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2013에 의거함.

48_ HS 품목코드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

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 통제상업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가 필요한데, 이 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양국간 무역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제상업물품에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군이 해당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어 국외소재 기업은 취득을 할 수 없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품목마다 달라 취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수입허가제도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비자동수입허가 요건을 내포하고 있고, 품목마다 제출서류가 달라 대상제품의 원활한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구매 제도'에서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에만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

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투자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 licens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요건(100만 링깃(약 3.2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인도

2013년 기준 한·인도 상품 무역액은 175.6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13.8억 달러와 61.8억 달러(총 상품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1.2%)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52.0억 달러 흑자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27.8%), 기계류(26.3%), 전기전자(18.0%), 철강금속제품(17.0%)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42.7%)과 농림수산물(16.6%), 철강금속제품(15.8%), 화학공업제품(12.2%) 등이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부터 2014.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5.7억 달러(전체 IFDI 중 0.3%)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OFDI는 1968년부터 2014.9월까지의 누적액(실투자액 기준)이 약 36.0억 달러(전체 OFDI 중 1.3%)이고, 이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5.1%이며, 그 외 유통(5.8%), 금융・보험(2.3%)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인도간 CEPA가 2010.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2013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중고차량 1000~2500cc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수입가능,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 수입가능하나 800cc를 초과할 수 없음).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불투명한 통관행정절차

인도에서는 기재 오류 등 작은 실수,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화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내 수입업자가 구매를 거부한 수출품에 대해 세관에서 재반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입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시장상황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불리할 때 구매를 거부한 이후 구매거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해주지 않아 수출품의 재반출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 인도에서는 주경계를 통과할 때 추가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어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으로 판매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 제도 등이 없어, 인도 내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뿐 아니라 제3국에 거쳐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0,000달러)를 인도 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다.

의료기기

일부 의료기기[49]를 인도 내에서 제조 및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약품표준 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으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상품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때 상기 제품이 미국, 유럽, 일본,

49_ ①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②Disposable Hypodermic Needles, ③Disposable Perfusion Sets, ④In-vitro Diagnostic Devices for HIV, HbsAg and HCV, ⑤Cardiac Stents, ⑥Drug Eluting Stents, ⑦Catheters, ⑧Intra Ocular Lenses, ⑨I.V. Cannulae, ⑩Bone Cements, ⑪Heart Valves, ⑫Scalp Vein Set, ⑬Orthopaedic Implants, ⑬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 등

캐나다, 호주 등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록증 발급 신청에 제한이 존재한다. 즉, 이들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이들 국가에서 판매 및 등록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CDSCO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에야 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등록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발급기간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개월 정도가, 신청비용은 1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제품별로 각각 신청 및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등록증 발급 이후 제품 사용용도 변경 및 확대, 에이전트, 수입 및 공급업체 주소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3개월 내 CDSCO에 통지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원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등록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것 역시 애로사항이다.

화장품 등록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 역시 2013. 4월부터 CDSCO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제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 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 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 시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

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철강제품

2012.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50]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승강기

델리 주정부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평명 에스컬레이터와 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델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법(Delhi Lifts and Escalators Bill 2013) 초안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도 연방정부와 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행될

50_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예정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뭄바이 승강기법(Bombay Lifts Act, 1939)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검사 및 증명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나 자세한 내용은 인도 정부에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델리 소재 모든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해당되며 건물주는 기존 1~3년 기간으로 발급되던 승강기 관련 라이선스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및 상가의 건물주는 사용자를 위한 제3자(기술자, 노동자 제외)를 통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건물 또는 상가의 건물주는 수감 또는 1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여부에 따라 두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위반 일수마다 5천 루피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외 일반 사유지, 거주 건물의 경우는 위반 항목 당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마다 최대 5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텔레콤 네트워크

인도에서 수입 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버그, 악성코드 등의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발효되었던 Unified Access Services Licence(2005.12.14)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2011.5월에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2013.4월부터 수입하는 모든 휴대폰 및 관련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제조 시설 등을 인도 내의 공인된 검증 기관 및 DoT 또는 DoT의 에이전트로부터 보안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법안 시행이 불가능하여 시행 일자를 10.1일로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공고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Tata telecommunication, Vodafone, Airtel, Aircel 등이 통신 관련 서비

스 및 기기(소프트웨어 & 하드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은 법안으로 명시한 모든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안마다 5억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외 단순히 통신 관련 기기(하드웨어)만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및 벤더 등은 이 법안에서 명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을 경우, 거래하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가 법안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벤더 및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업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인도 내 사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라이선스 취소 처리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산(acid) 제품

인도 정부는 국내 전역에서 산을 이용한 테러 및 사람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판매되는 모든 산의 경로를 추적 및 통제할 수 있도록 The Poisons Possessin and Sale Rules(2013)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산을 판매, 구입, 취급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담당기관인 SDM(Sub Divisional Magistrate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 전 지역에서 산을 구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에게 적용되며, 18세 이하에게는 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경우 Meerut, Agra, Gonda, Kanpur, Bareilly 등의 도시 거리에서 산을 이용한 테러가 최근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빠르게 수렴 및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타르 프라데시 주 내 모든 산 판매자들은 2주일 이내 SDM에 보유 물량과 판매점 주소, 등록된 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라이선스가 없는 상점에서는 산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교육기관, 연구소, 병원,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기관 역시 산 관련 재고량과 사용용도 등의 세부사항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명확히 신고해야 한다. 산 판매자 역시 산 관련 거래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판매량, 판매된 산의 사용용도, 구매자 이름, 구매자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외 SDM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5만 루피(원화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수 있다.

기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상의 제한

인도 정부는 The Foreigners Act, 1946에 따라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연간 2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연봉 총액에 따라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아 인도에 입국한 후에도 유효기간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의 고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 도착 후 14일 이내에 복잡한 서류를 갖추어 현지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rs/Foreigners Registration Officers)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지체될 경우 벌금(30달러)을 부과한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FRRO/FRO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나 기준이 모호하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며, 연장 신청이 처리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터키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 5.1일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월별 수출입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바, 2013.5~10월간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29.6억 달러로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6.2% 증가하고, 대터키 수입도 3.32억 달러로서 9.9% 증가하였다.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한국의 대터키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차량부속품, 승용차, 불도저, 철강, 선박 등이며,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석유제품, 의약품, 엔진부품, 가방류, 어육, 의류, 담배, 차량부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는 6.5% 관세 즉시 철폐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합성수지와 화학제품은 터키의 자력 공급이 어려운 부문으로 동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도 국제적 차이가 낮지만, 대규모 거래로 인해 작은 관세 인하폭에도 불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가정용은 품목별로 호부진의 차이가 많아 관세인하 보다는 현지 시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가격 민감성이 큰 전자부품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큰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등은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6개월만의 자료로 전반적인 영향 분석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간재, 원료, 부품 등은 가격민감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소비재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높지 않아 연차적으로 관세 인하폭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7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실질타결되고 9월에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기술규격승인(TSE)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있어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뿐만 아니라 터키 표준규격승인(TSE)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TSE를 수출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은 Red Line[51]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바이어와의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고, 정유공장, 공항, 항만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외국

51_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자만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터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관광가이드는 약 120여 명으로, 통역사 자격으로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한 터키 국적자를 대동해야만 가이드 활동이 가능해, 현지 비자발급, 노동허가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2014년 기준(1월~11월) 터키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213,645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키인 관광객(20,874명)보다 10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터키 내에서 한국인 관광가이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청과 산업부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들과 중앙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타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인데, 2003.2.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청과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9월 노동부로 일원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였으나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8.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키인 5명 고용원칙'에 따른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4.20일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딴 경우, ②터키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터키는 국내산업 보호 및 수입 억제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S Code 3907.60.20)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2014.10.31)한 바 있다.[52]

52_ 터키경제부의 2014.10.31일자 관보(제29161호, 통지문 No.2014/6911) 참조. 상기 관보에 따르면 동 조치는 2014.11.8.일부터 시행되며, 1년씩 다른 관세율로 총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무역은 2009년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2011년 수교 이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3년 226.5억 달러(우리나라 전체 상품 무역에서 2.1%를 차지)로 사상 최대치를 시현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상품 수출입 규모는 각각 111.5억 달러와 115.0억 달러로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이다.

양국간 투자관계를 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14.6월말 기준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1.9억 달러로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4.6월말 기준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30.4억 달러(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8.5%), 도소매업(8.5%), 광업(7.6%), 농림어업(6.8%) 등이다.

통관

비효율적인 통관 절차

WorldBank에서 2013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을 보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5개국가중 국경 통관 부문에서 162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측면을 보면 필요서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개 늘어났으며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전히 평균 36일로 조사되었다. 수출통관시 소요

되는 평균기간이 36일에서 21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년간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인증 제도 변경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3국 관세동맹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s Union) 인증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서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기존의 러시아 인증(GOST-R)이 관세동맹 공통인증인 CU인증으로 순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체 시기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3국 공통의 기술규제를 위해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즉 특정 품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화장품

화장품류에 대한 러시아의 까다로운 수입절차 및 등록서류 등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러시아 시장 진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조정 및 도량기관(Rospotrebnadzor)이 발행하는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리고 일부 제품의 경우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 기술규정에 따라 ①태닝을 위한 향수 및 화장품, ②미백, 문신용, 피부보호, 염색, 모발용, 위생, 아동용, 나노 향수 및 화장품, ③필링, 불소 함유 구강 위생용 제품(불소 0.15% 초과), 과산화수소 등을 포함한 치아미백 제품 등은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등록증명서는 소비자 권리 및 건강 감독청(Rospotrebnadzor) 또는 위임을 받은 해당 공인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7월 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9월 1일 발효)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정부용 및 대중교통용 차량, 구급서비스·공공기관·유틸리티 용도의 특수 장비, 건설 장비, 농기계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원단, 로프, 그물, 의류, 가죽, 모피, 가방, 신발, 신발밑창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정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

한국의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11년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양국간 상품 무역 규모는 303.5억 달러(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이며,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95.36억 달러와 207.9억 달러로 11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광산물(38.0%, 주로 석유제품)과 기계류(29.3%), 철강금속제품(12.1%), 전기전자제품(8.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78.3%, 주로 철광석 등 원료)과 농림수산물(11.5%)이다.

한·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은 2014.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23.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에서 1.0%를 차지한다. 호주의 대한국 주요 투자업종은 음식·숙박(38.8%), 문화·오락(16.3%), 부동산·임대(15.6%) 등 서비스업 중심이며, 제조업에서는 운송기기(11.8%)에 대한 투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OFDI는 2014.9월까지의 누적액이 101.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3.7%를 차지하는데, 대호주 투자 중 79.7%가 광산업에 시행된 것이며, 그 외 금융·보험(6.4%), 부동산·임대(3.5%), 유통(2.2%)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호주 양국간 FTA는 2013.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2015.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양광패널

2013.1월 현재 수력 및 풍력에 의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은 전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의 12.1%에 달한다. 호주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어서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 시장에서 Trina, Renesola, Suntech, Canadian, China Sunergy 등 중국의 5대 메이커에 의한 태양광 패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버터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중국산 사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저질 부품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설치 업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그 동안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규정 강화안을 Standards Australia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부서인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산하의 호주의 약품관리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즉, 의료기기 판매의 경우 호주측 파트너가, 의료기기 수출의 경우 현지회사 및 에이전트가 등록해야 한다. 이때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 또는 수출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에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Australian registered company or business)를 지정(스폰서)하여 대신 진행해야 한다.

한편 선적 및 통관 시 TGA 승인 여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호주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TGA 승인 또는 ARTG 등록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으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CE 인증이 있는 경우 ARTG 등록 절차는 매우 간소해질 수 있다. 그러나 CE 인증이 없는 경우 TGA를 통해 순응평가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하여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기타

무역구제조치

호주는 최근 2-3년 동안 다양한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53]. 최근에는 호주의 반덤핑조치가 국내산 제지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호주 수출 관련 기업들은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3_ 호주는 한국산 철강 4개 품목(철강재파이프, 열연코일,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중이며, 2개 품목(철근, 열연구조섹션)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

브라질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 규모는 2011~2013간 연평균 166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전체 교역규모의 약 30%에 해당한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경제의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은 최근 2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브라질의 교역 규모 성장률 감소, 브라질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의 악화 ,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3년 우리 자동차(HS Code 8703)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2014년 6월말 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67.6억 달러(실제 투자 5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2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브라질정부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통관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을 규정

통관 규정의 잦은 변경, 복잡한 절차는 소위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대표적인 기업활동 장애 요인의 하나이다.

브라질정부는 1998년부터 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을 규정하여 별도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의 경우,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만연한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 표준 불인정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

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서 품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개발상공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한 외국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아직 INMETRO가 우리나라 인증기관과는 MRA를 체결한 사례는 없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기업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요구 품목(2013.10월 기준)

플러그 및 콘센트 어댑터	알코올 밀폐포장용 용기
차량용 질소 산화물식 액상 환원제	위험물의 육로 수송용 용기
일회용 멸균 피하 및 잇몸 주사기	연료 분진 및 가연성 가스 및 증기 상황에서 폭파를 방지하는 기기
식수 품질 개선 장비	위생법하의 전기제품
즉석 및 누적식 가스 온수기	주입펌프와같이사용하는투입및 주입 관련 부품
성인용 자전거 휠	교류형 안전장치(stabilizer)-250V, 3kVA/3KW 이하
학교 용품	소화기
축제 용품	시내대중교통용 차량 생산 검사
스포츠 관중석	고속도로 대중교통용 차량 생산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용 철근을 위한 철강선 및 바	유연 전선, 케이블, 코드
음수기	가정용 가스레인지 및 오븐
어린이 침대	상업용 전기오븐
PVC 케이블 (0.6/1kV)	전자레인지오븐
일반 강철 케이블	안전성냥
전자제품용 PVC 피복 케이블-500V 이하	스토퍼 및 카트리지 타입의 휴즈
PVC 케이블 (750V 이하)	유방보형물
전자제품용 고무(EPR) 피복 케이블-500V 이하	소화기 압력계
플라스틱 의자	주거용이나 유사한 전기설비용 스위치
성인인 자전거용 타이어 튜브	차량용 유압 브레이크용 액체
산업용 헬멧	천연고무/합성고무 소재 수술용 장갑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장갑
모토 사이틀 용 헬멧	젖병 및 젖병 꼭지

플러그 및 콘센트 어댑터	알코올 밀폐포장용 용기
유모차	가정용 LPG 가스용 PVC 호스
버스 차체 규격 검사	학교용 가구-의자(책상이 붙어있는)
공갈 젖꼭지(노리게 젖꼭지)	성인 자전거용 니플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실린더(봉합하지 않은 모델)	압력솥
차량용 고압가스 저장용 실린더	금속 냄비
폴리우레탄 발포 매트리스 및 매트	성인 자전거용 페달
자동차 부속품	위험 화물 수송 차량용 킹핀
성인용 자전거 부속품	차량용 엘리베이터식 플랫폼
차량용 천연가스 압축 시스템 부속품	아날로그 및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
차량용 천연가스 시스템 부속품	성인 자전거용 타이어
주유소용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새 타이어
개인보호장구 중 추락관련 보호장구 - 안전벨트, 제동장치, 안전로프	남성용 콘돔
PVC로 감싼 컨덕터(Conductor) (전압: 450/750V)	위험화물수송차량(고속도로용)Fifth-wheel
유체 전도용 가단성 주철식 커넥션	성인 자전거 바퀴용 살
성인 자전거용 방향장치	형광등용 교류전류식 리액터
성인 자전거용 브레이크장치	형광등용 리액터
성인 자전거용 프레임	LPG 이동식 가스통
대중교통용 탑승 건축물	전자시간기록계
위험물 수송용 IBC	LPG 가스 압력 조절기(4kg/h 이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자동차 휠
성인 자전거용 철사	가정용 전자제품 및 유사제품 안전 여부 검사
CSP 피복 전선-300V 까지	아동용 자전거 안전 여부 검사
차단기	장난감 안전 여부검사
컨테이너 고정 장치 적응 서비스	멸균 피하 주사기
아동용 지지대	컨테이너 고정 장치 적응 서비스
위험물 수송용 대형포장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수송용 재생포장용기	위험물 육상 수송용 이동식 탱크
위험물 육로수송용 재활용포장용기	석유부산물 및 기타 연료 항공 수송용 탱크
태양열 온수 장치	유체 전도용 탄소 강관
ICP-Brazil 전자인증장치	자동차 연료용 비금속 배관

플러그 및 콘센트 어댑터	알코올 밀폐포장용 용기
고무 피복 장갑	컨테이너 수송 차량
분진필터	선풍기
보조 차축	고속도로용 차량의 전면용 플레이트 유리
안전성냥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고속도로용 차량용 강화유리

브라질에서 강제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립계량품질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54]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브라질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는 IT제품 이외 정부조달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무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Buy National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조달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 (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54_ http://www.inmetro.gov.br/qualidade/prodCompulsorios.asp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웠다면,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도로 및 철로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지난 2004.12월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나, PPP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은 늘어나고 있다.

환경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 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12월 통과되어 2005.1월 공포된 법

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에는 환경부 및 CETESB(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청)가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